나라를 위한 희생과 정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수신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관련 업게 및 기관
(경유)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의무사항 안내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1의 14개 품목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으로 분류 되어 그동안 유예되었던 서류 비치 의무, KC 마크 부착 의무등이 부과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품목은 2018년 7월1일 부터 해당 품목은 출고 또는 통관전에 해당품목 안전기준에 만족하다는 시험성적서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시고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 끝.

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인

공업연구관 **김홍준** 과장 전결 2018.6.26. **김용태**

협조자

시행 생활제품안전과-1737 (2018. 6. 26.) 접수

우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http://www.kats.go.kr

전화번호 043-870-5352 팩스번호 043-870-5668 / bethetop@korea.kr / 비공개(5)